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8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비용 공제 신설(조지연의원안)	2
2.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조지연의원안)	9

I. 개요

1.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18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지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4.

(3) 회 부 일 : 2025. 8.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자동차 부품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대외적 부담을 상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내 생산기반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함.

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국내 자동차 산업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비용 공제 신설(조지연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제100조의35) ○ 공제대상: 내국인이 공제요건을 갖추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공제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②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 소재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③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 공제율: 15% ○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 적용기한: 2030. 12. 31. ○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세액공제) 이 법 시행 이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복지원 배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이월공제)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조지연의원안 2025. 8. 14. 발의(의안번호 12189)

□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¹⁾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를 공제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첫째, 대내외적 여건 악화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2023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불,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불에 달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둘째, 해외 직접 생산 압력 증가에 따른 생산기지의 국내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탄소중립²⁾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됨.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평균 지표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장기목표를 규정하였음.

이후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하였고,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확충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펼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2024년 12월말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현황은 총 274만 6,655대로 전체 누적등록대수 대비 10.4% 수준으로 매년 그

2)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을 통한 흡수 또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등을 통한 제거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탄소의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름.(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22.)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환경친화적 자동차 누적 등록 현황]

(단위: 대, %)

연도	하이브리드차 (A)	전기차 (B)	수소전기차 (C)	환경친화적 자동차 (A+B+C)		전체 누적등록
					비중	
2019	506,047	89,918	5,083	601,048	2.5	23,677,366
2020	674,461	134,962	10,906	820,329	3.4	24,365,979
2021	908,240	231,443	19,404	1,159,087	4.7	24,911,101
2022	1,170,507	389,855	29,623	1,589,985	6.2	25,503,078
2023	1,542,132	543,900	34,258	2,120,290	8.2	25,949,201
2024	2,024,481	684,244	37,930	2,746,655	10.4	26,297,919

주1: 해당 연도 12월 기준

2: 비중은 전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대비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임.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 보고」 (각 연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비효율적인 생산구조일수록 세제지원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는 생산비용 공제제도는 수입품에 대한 차별조치이므로 통상규범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연구용역을 통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셋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³⁾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구 분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70만원	300만원	400만원
적용기간	2009. 1. 1. ~ 2026. 12. 31.	2012. 1. 1. ~ 2026. 12. 31.	2017. 1. 1. ~ 2026. 12. 31.

주: 개별소비세액의 30%만큼 교육세 부과(surtax)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4)에 따라, 배기량이 1천cc 이하의 경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의 승용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포함), 캠핑용자동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4)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및 이륜차는 모두 출고가격의 5%를 기본세율로 적용받고 있음.

2025년에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여 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1. 3. ~ 6. 30. 출고분)에 한하여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5%에서 탄력세율⁵⁾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실시하였고,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책을 6개월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2]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기술로서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등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기술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30%(대기업), 30%~35%⁶⁾(중견기업), 35%(중소기업)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기술의 사업화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15%(대기업), 15%~20%⁷⁾(중견기업), 25%(중소기

5)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절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6)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3년간 20%

7)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3년간 20%

업)의 공제율이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

분 야	국가전략기술
6. 미래형 이동수단	가.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나.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다.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라.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감속기·변속기 등 구동시스템을 고효율화하는 기술
	마.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동력 자동차와 연결되는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문 의 처

02)6788-5154

2.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조지연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 ○ 적용대상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자동차: 대당 70만원 - 전기자동차: 대당 300만원 - 수소전기자동차: 대당 400만원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30년 12월 31일</u> ☐ 부 칙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조지연의원안 2025. 8. 14. 발의(의안번호 12189)

☐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대상으로 신설되었고, 2012년에는 전기자동차, 2017년에는 수소자동차가 동 제도에 포함됨.

개별소비세의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신설 당시 100만원이었으나 2024년 세법 개정으로 7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전기자동차는 도입 당시 200만원이었으나 2018년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수소자동차의 경우 신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4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음.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구 분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70만원	300만원	400만원
적용기간	2009. 1. 1. ~ 2026. 12. 31.	2012. 1. 1. ~ 2026. 12. 31.	2017. 1. 1. ~ 2026. 12. 31.

주: 개별소비세액의 30%만큼 교육세 부과(surtax)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별소비세법」⁹⁾에 따라,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9)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배기량이 1천cc 이하의 경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의 승용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포함), 캠핑용자동차 및 이륜차는 모두 출고가가격의 5%를 기본세율로 적용받고 있음.

2025년에는 경제정책방향¹⁰⁾을 발표하여 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1. 3. ~ 6. 30. 출고분)에 한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5%에서 탄력세율¹¹⁾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실시하였고,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책을 6개월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음.

□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탄소중립¹²⁾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화석연

나.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10) 「2025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합동, 2025.1.2.

1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절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12)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을 통한 흡수 또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등을 통한 제거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탄소의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름.(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22.)

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말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현황은 총 274만 6,655대로 전체 누적등록대수 대비 10.4% 수준으로 매년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환경친화적 자동차 누적 등록 현황]

(단위: 대, %)

연도	하이브리드차 (A)	전기차 (B)	수소전기차 (C)	환경친화적 자동차 (A+B+C)		전체 누적등록
					비중	
2019	506,047	89,918	5,083	601,048	2.5	23,677,366
2020	674,461	134,962	10,906	820,329	3.4	24,365,979
2021	908,240	231,443	19,404	1,159,087	4.7	24,911,101
2022	1,170,507	389,855	29,623	1,589,985	6.2	25,503,078
2023	1,542,132	543,900	34,258	2,120,290	8.2	25,949,201
2024	2,024,481	684,244	37,930	2,746,655	10.4	26,297,919

주1: 해당 연도 12월 기준

2: 비중은 전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대비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임.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 보고」 (각 연도)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별소비세 감면과 같은 조세 감면 혜택이 없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동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조세특례 심층평가¹³⁾에 따르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추진 방안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내

13)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24. 9. p.207

연기관차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점까지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 가지 유형의 차량(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동 감면제도에 따른 2024년도 감면세액은 하이브리드차는 2,408억원, 전기차는 2,057억원, 수소전기차는 68억원으로 총 4,533억원이며, 2025년에는 총 5,547억원, 2026년에는 5,886억원으로 전망되어 조세지출의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2026 (전망)
하이브리드차	750	1,085	1,470	2,740	2,408	2,913	3,166
전기차	490	700	1,613	2,580	2,057	2,602	2,687
수소전기차	142	167	208	178	68	32	33
계	1,382	1,952	3,291	5,498	4,533	5,547	5,886

주: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임.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므로, 2026년에 제도 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를 거쳐 조세특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